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]

- 점검일시 : 2020.12.11 (금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최영준

○ 중량물취급 안전(방재시설부)

-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재 양중 작업시에는 2점이상 지지 되도록 관리하기 바라며,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.
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33(3.양중작업의 낙하방지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유입부 작업장 통로상에 노출되어 있는 인화성 물질(경유 등)은 화재재해예방을 위하여 별도 보관장소에 이동조치하여 관리하기 바라며,
 - 반포천 복개구간 작업장에는 적정 소화기를 비치하여 관리하기 바람.
 - 또한, 반포천 복개구간 작업장은 악취가 심하여 작업자 관련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작업장 내 적절한 환기와 휴게시간을 관리감독하기 바람.
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(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)



○ 감전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유출부 반포천 복개구간 작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철근절곡기는 비상정지장치가 오물로 인하여 식별이 어렵고, 사용하고 있는 전선의 접지선이 단락되어 있으니 조치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18(기계기구접지),-022(철근절단기 및 절곡기)



○ 작업장조도 확보(방재시설부)

- TBM 터널내 오작동되는 조명시설이 일부 확인되니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하기 바람.

- 특히, 작업자 공간 또는 동선을 중심으로 조도를 확보(이동식 투광등, 헤드랜턴 등)하여 관리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(조도)



○ 품질관리(방재시설부)

- 터널 구간 부속물 시공 등으로 인해 일부 보수조치가 필요한 구간이 확인되니 전 구간 확인을 실시하여 필요구간에 대하여 조치하기 바람.

- 또한, 개착구간 하단부에 암반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돌출되어 있으니 조치하기 바람.



